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 판정기준

1. 자체 수요가 많아 내부 활용도가 매우 높은 연구시설장비

 (연간 2,000시간 이상 활용 장비)

2. 시작품, 시제품 수준으로 시험운영 중이거나 요소 부품 및 기술을 개발 중인 연구시설장비

3. 특수목적용 연구시설장비로서 반드시 자체 특화된 연구에만 전용되는 연구시설장비

4. 상시 모니터링 및 계측용으로 연중 실시간 또는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연구시설장비

5. 국가안보, 기술유출 등으로 보안 및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연구시설장비

6. 위험물질 취급 및 고위험성으로 인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연구시설장비

7. 초고감도 정밀연구시설장비로 오염 및 손상 시 복구가 불가능한 연구시설장비

8.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해 타 이용자의 사용이 불가능한 연구시설장비